

제2장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

김혜련 · 임경민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후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실업 및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여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지만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이외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3의 부문¹⁾인 비영리단체의 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단체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김준기(199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영리단체는 정부나 시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독점, 예산낭비 등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한다. 둘째, 비영리단체는 민주주의 참여의 장의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비영리단체는 공공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시장 및 정부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 및 수요를 만족시킨다. 넷째, 비영리단체는 사회 및 정치적 통합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분쟁, 소비자대생산자분쟁, 인권보호 등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1) 제3부문은 국가별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제1부문)나 시장(제2부문)과 구분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악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복지부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익활동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나눔’(philanthropy)²⁾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³⁾ ‘나눔’은 자신의 자원(시간, 돈 등)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통해 기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에 비영리단체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의 자선, 자원봉사 등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실업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부문에서의 고용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 생산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국민 총생산 및 총지출에서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의 비중은 각각 5.7%, 1.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비록 비영리단체가 우리나라 사회 및 경제에서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범위가 정의되지 못하여 추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비영리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비시장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박태규, 2006) 또한 비영리단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총수, 재정현황 등 관련 기초통계 생산도 부족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제도부문⁴⁾중 하나인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형태로 국민계정에서 일부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비영리단체 전체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비영리부문 전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측정하려는 국제적 프로젝트가 1991년부터 John Hopkins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03년 UN은 비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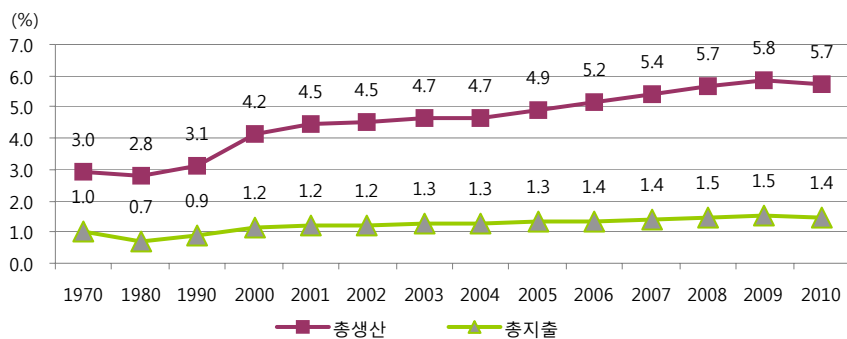
- 2) 나눔은 단순히 주는 행위, 동정적인 관계에 기초한 자선행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좀 더 포괄범위가 넓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박애활동(philanthropy)’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 3) 최근 정부는 “나눔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또한 나눔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 수립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12. 3월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하고 현재 2차 회의까지 개최하였다.
- 4) 국민계정에서는 제도단위를 주된 경제 거래 분야, 목적, 소유주체의 종류에 따라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s), 가계(households) 및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s: Non Profit Institution serving Households)의 5개의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으로 분류하였다.

위성계정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⁵⁾을 발간하였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15개국에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작성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제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또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포함한 관련 통계 생산 및 연구에 소극적이었다.⁶⁾ 하지만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부문의 전체 규모, 수입 및 지출 구조 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도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기초통계인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비영리단체의 개념, 분류 등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 따른 작성방법을 파악하고, 해외 작성 사례로서 뉴질랜드의 작성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시 이용 가능한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발 과정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비영리단체 계정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제3절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개념, 종류 및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기본 구조, 필요 변수 등과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 제시하는 관련 통계 표 및 이용 가능 자료가 제4절에 제시된다. 제5절에서는 해외의 작성사례로서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뉴질랜드의 작성현황을 파악한다. 제6절에서는 현재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용가능 기초통계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추가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통계시스템(ECOS), ecos.bok.or.kr

[그림 2-1]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5)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관련 사전적 국내 연구로서 유일하게 박태규(2006)의 「한국 비영리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제2절 비영리단체 계정의 필요성

현재의 국민계정체계(SNA)에서 비영리단체를 제도부문별로 할당하는 것은 분석적 의미를 가지지만 비영리단체 전체를 체계 있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UN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2003)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영리단체는 선진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의 7~10%를 차지하고 개발도상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는 기업 및 정부부문과 다른 생산기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영리법인기업과 다르게 운영목적상 영리의 분배 금지
- 사적재 생산뿐만 아니라 공공재 생산에 참여
- 수입구조는 대부분 자발적 기부 포함
- 유급직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고용
- 이윤 분배 금지로 인해 자기자본(equity capital)에 대한 제한적 접근
-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별세금혜택 부여
- 관리, 보고의무 및 정치적 참여 등에 대한 특별법적규정
- 공공재 생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정부권한의 결여

셋째, 정부의 사회적 기능을 민간에게로 전환을 추구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증가로 정확한 관련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비영리단체를 제도부문별로 할당하는 현재 국민계정의 방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영리단체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비영리단체의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제도부문별 할당방법의 적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국가마다 국민계정 상에서 처리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제3절 비영리단체의 개념, 정의 및 분류

1. 일반적 개념

비영리단체(NPI: Non-profit Institutions)와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은 동일한 개념으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UN의 국민계정 체계(SNA)(1998, 2003)에 따라 국민계정상의 용어인 비영리단체로 통칭한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단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비정부조직(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비정부조직(NGO)은 UN에서 정부이외의 조직을 총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45년 UN 헌장 제71조에 언급됨으로써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UN 헌장 개정을 통해 '50년 2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정부이외의 조직으로서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⁷⁾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NGO도 비영리단체와 유사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비해 정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며, 비정부 및 비국가조직체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적 집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NGO는 가치중립적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성격이 내포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부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⁸⁾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민법(제32조),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된다. 비영리법인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며 법인세법에 의해 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담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⁹⁾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

7) UN 헌장 제71조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Such arrangements may be mad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here appropriate, with national organiza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ed.

8)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말한다. 재단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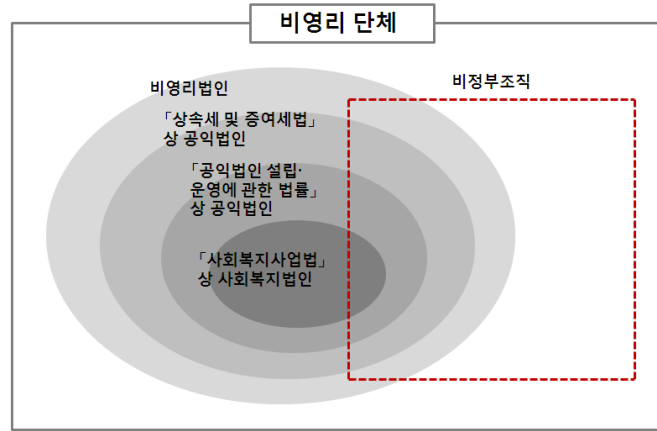


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정의된다. 상증법 시행령상 열거된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증법의 공익법원 포괄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은 각 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¹⁰⁾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비정부조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모두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그림 2-2〕

- 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10)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디. 「의료급여법」, 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베틀.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그림 2-2] 비영리단체와 유사 개념과의 관계

2. 국민계정체계(SNA)에서의 개념¹¹⁾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에서 비영리단체는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¹²⁾중 하나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비영리단체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를 설립·지배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단위에 대해 소득, 이윤, 기타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못한다.”(2008 SNA 4.83)¹³⁾

비영리단체는 다른 제도단위인 법인기업, 정부 및 가계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인기업(corporations)은 시장생산(market production)에 참여하고 소유자를 위해 이윤이나 다른 재정적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governments)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법적 실체로서 일정 영역 내에서 다른 제도단위들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제도단위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거나 강제적 이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계(households)는 동일한 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소득과 부를 공유하며 특정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집합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11) UN(2003)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2)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며 다른 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로 법적 책임 및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법인기업,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분류된다.

13) Non-profit institutions (NPIs) are legal or social entities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but whose status does not permit them to be a source of income, profit or other financial gain for the units that establish, control or finance them



SNA에서는 제도단위를 주된 경제 거래 분야, 목적, 소유주체의 종류에 따라 비금융 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s), 가계(households) 및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s: Non Profit Institution Serving Households)의 5개의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으로 분류한다.

모든 법인기업은 비금융 및 금융법인기업부문으로, 모든 정부는 정부부문으로, 모든 가계는 가계부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5개 부문 모두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대학 또는 병원과 같은 비영리단체는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가지면 비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미소금융기구(microcredit financing organization)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므로 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주된 지원 및 지배를 받는 비영리단체는 정부부문에 분류된다. 법적지위가 부족하거나 자원봉사에 대부분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는 가계부문에 분류된다¹⁴⁾. 가구로부터 기부금의 형태로 대부분의 수입을 충당하고 정부의 자금지원 및 지배를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로 분류된다.

제도단위	SNA 제도부문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봉사비영리단체
법인기업	C_1	C_1			
정부			G		
가계				H	
비영리단체	N_1	N_2	N_3	N_4	N_5

[그림 2-3] 1993 SNA에서의 비영리단체 포괄범위

SNA에서는 사업체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s), 자가최종소비생산자(producers for own final use) 및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s)로 구분한다. 시장생산자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economically significant) 가격¹⁵⁾으로 생산하여 판매한다. 자가최종소비생산자는 자신의 최종소비 또는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다. 비시장생산자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무료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14) 1995 European System of Accounts

15) 93 SNA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EU의 1995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에서는 생산비용의 50%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되고 수개년도 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도 시장생산자와 비시장생산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단과대학, 대학교, 진료소, 병원 등의 비영리단체는 자신의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 요금이 제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책정되면 시장비영리단체이다. 반면, 비영리단체는 개인, 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기부를 통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금을 평균비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목적이 자선이 아니라 높은 질의 교육, 건강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금은 단지 높은 요금을 조금 낮추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시장생산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시장 기업봉사비영리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상공회의소, 업종별 조합, 고용자 단체, 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회원기업을 위한 공동광고, 정치가에 대한 로비, 경영이 어려운 회원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이들 비영리단체는 회원기업의 회비(contributions or subscriptions)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이전 거래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시장생산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유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지배 및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경우 비시장생산자로 분류하여 정부부문에 포함시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시장 비영리단체는 비시장생산자로서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출물을 제공한다. 이들은 주된 재원을 판매수입보다는 정부 등 협회회원의 회비, 이전지출 또는 제3자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비시장비영리단체는 크게 정부의 지배와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와 가계에 비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구분하며 주요 재원을 가계, 법인기업, 비거주자 등 정부가 아닌 제도단위의 이전지출에 의존한다. 이중 후자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s)”로 별도의 제도부문으로 분류된다.

3.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의 비영리단체 정의¹⁶⁾

UN은 기존의 SNA 체계에서의 조직화와 이익미배분의 특징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정의와 유사하게 구조·운영적 정의(structural-operational)로써 ① 조직화(organization), ② 비영리 및 영리미배분(not-for-profit/non-profit-distribution), ③ 정부와 조직적으로 독립(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government), ④ 자치적 운영(self-governing) 및 ⑤ 자발적 참여(non-compulsory)의 5개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직을 비영리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조직화의 의미는 제도적 실체로서 ① 어느 정도의 내부적 조직구조, ② 목적, 구조 및 활동의 지속성, ③ 의미 있는 조직경계, ④ 또는 법인에 대한 법적 허가서를 가진다

16) UN(2003)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과정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회에 의해 그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및 영리미배분은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이윤생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상업적 목적 및 대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조직운영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영업잉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영업잉여를 생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업잉여를 조직의 기본임무에 맞는 곳에 투자 하고 소유자, 구성원, 설립자 또는 이사회에 배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업잉여가 다른 비영리단체에 배분된다면 비영리단체의 영리미배분 기준에 적합한데 이는 영업잉여가 자산과 다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 여전히 비영리단체 부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조직적으로 독립의 의미는 단체가 정부조직의 일부가 아니며 자기의 권리로써 정부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상당할 정도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이사회에 정부 관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조직의 생산과 자본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단위의 조직과 분리된 제도적 실체이다.

자치적 운영은 조직의 자기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다른 조직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예와 같이 조직의 자치권과 구조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여부가 결정된다.

- 만약 조직이 다른 조직의 허가 없이 자신의 법에 의해 해산, 설립 및 변경이 가능하고 조직의 미션 또는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조직은 비영리단체임
- 이사회에 정부 또는 회사대표가 있어 관리적 능력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자치적 운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음. 하지만 조직이 가지는 권한행사 및 자치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자회사가 모회사에 의해 심하게 통제 받으면 제외되고 자회사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계열회사에 매일 통제받지 않는다면 포함됨
- 정부 또는 회사가 조직의 이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가 정부 또는 회사관료인 조직은 비영리단체가 아님

자발적 참여는 회원과 시간 및 금전적 기여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시민권의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비영리단체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장 생산자도, 정부가 재정적 보조 및 이사회 임명권한을 가지는 기관도, 가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직도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림 2-4]에서와 같이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독립된 비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93 SNA상 제도부문의 영리와 비영리 요소 모두가 나타난다.

제도단위	SNA 제도부문					비영리부문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법인기업	C_1	C_1				
정부			G			
가계				H		
비영리단체	N_1	N_2	N_3	N_4	N_5	$N = \sum_{i=1}^5 N_i$

[그림 2-4]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의 비영리단체 포괄범위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는 명확하게 비영리부문에서 속하기도 하지만 비영리부문과 다른 기업 또는 정부부문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문도 있다. 명확하게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조직의 예는 <표 2-1>과 같다.

<표 2-1> 비영리부문의 비영리단체 예시

조직	정의
비영리서비스 제공단체	병원, 고등교육기관, 탁아소, 학교, 사회서비스제공단체, 환경단체
비정부조직	경제발전 또는 빈곤감소 증진 기관
예술 및 문화조직	박물관, 예술공연센터, 오케스트라, 합주단, 역사 또는 문학사회
스포츠단체	아마추어스포츠, 훈련, 체력단련, 시험 관련 단체
대변단체	시민권 및 기타 권리 증진, 유권자들의 사회 및 정치적 이익 대변
재단	가처분 자산 또는 기부금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타 기관에 기부 또는 자신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지역사회 기반 또는 기초적 협회	이웃, 지역사회 또는 마을의 회원을 대변하거나 서비스 제공단체
정당	정치관료에 대한 특정 입후보자 지원단체
사교클럽	개인회원과 지역사회에 서비스와 오락을 제공하는 여행단체와 컨트리클럽
노동조합, 사업 및 전문가 협회	노동, 사업 및 전문가 이익 증진과 보호 단체
종교단체	종교적 믿음 증진과 종교서비스 및 예식을 관리하는 교구, 유대교회당, 회교사원, 절 및 신사.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식 국교회는 제외. 종교단체는 건강,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교계열 서비스기관과는 다름. 유사하게 국교회 관련 서비스기관은 독립적 조직이고 모든 정의적 기준을 만족시키면 비영리부문에 속함



비영리부문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비영리단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협동조합(cooperatives)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개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조직된 단체이다. 어떤 협동조합은 상업적 기업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능을 하지만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SNA를 따라 비영리단체로 취급하지 않는다.
- 2) 상호회(mutuals)(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 저축 및 대부협회, 상호보험회사, 질병 및 장례기금 등)는 협동조합과 같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들에 의해 조직된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 공동기금 조성을 위해 정기적 기부금을 통해 위험을 공유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상호회는 상업적 측면에서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SNA에 따라 금융법인제도단위로 취급하고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비영리단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회가 정부제도단위로 정부사회보험제도에 완전히 속하거나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단체로 취급한다.
- 3) 자조집단(self-help groups)은 개인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상호지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동조합과 상호회와 같이 개인이 가입한다. 하지만 자조집단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경제자조집단(non-economic self-help groups)은 회원제조직으로 간주되고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자조집단(economic self-help groups)은 비영리단체에서 제외된다.
- 4) 사회적 기업(social ventures)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 및 훈련을 목적으로 조직된다. 비록 설립목적이 자선이지만 이윤을 소유주와 주주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준정부조직(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¹⁷⁾은 많은 유럽국가 등에서 발견되는데 법적으로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행정적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공조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 위임된 제한된 권한을 수행하지만 만약 완전히 자주적으로 운영되면 비영리부문으로 간주된다.
- 7) 대학(universities)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또는 영리기업이 될 수 있다. 대학이 완전히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정부행정부 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이다. 비영리단체

17) 우리나라에서의 준정부조직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기금의 관리 및 위탁관리하거나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2009년 현재 기금관리형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관이 있다. 위탁집행형은 한국농어촌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국립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5개 기관이 있다.

인 교육기관은 모든 조직운영에 대해 정부 승인 없이 결정하고 운영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체영구이사회를 가진다. 공공교육기관은 정부관리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상당부문 선택된 이사회가 있고 정부의 법률 없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 8) 병원(hospitals)은 교육기관과 유사하게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또는 영리기업이 될 수 있다. 교육기관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9) 캐나다의 원주민지역의회(band council), 페루의 소작농 또는 원주민사회 등과 같은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indigenous or territorial groups)는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 및 민족적 그룹 및 특정 지역으로 조직된다. 만약 이들 그룹이 자체적 법을 제정 및 집행하면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정부와 조직적으로 독립”의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4. 분류¹⁸⁾

비영리단체가 정의되면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를 관련 영역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조직이 참여하는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과 조직의 목적(또는 기능)(purpose or function)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경제적 활동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비영리단체의 주된 생산품 또는 생산품의 특징에 의해 산업별로 분류한다. 목적별 분류는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특정 경제활동이라고 해도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어 가계비영리단체를 위한 분류(COPNI : Classification of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가 고안되었다¹⁹⁾²⁰⁾.

하지만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만으로 광범위한 비영리단체를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경우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상세 분류가 부족하여 예를 들어 보육원, 재해구제, 지역단체활동 또는 직업재활별로 상세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일괄 ISIC 8532의 ‘비거주 사회사업’ 부문에서 포함하고 있다. 또한 COPNI의 경우는 가계비영리단체에 대한 분류로서 가계이외의 비영리단체의 활동 특히 기업봉사비영리단체

18) UN(2003)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9) 1993 SNA에 의하면 가구, 건강, 오락과 문화, 교육, 사회보호, 종교, 정당/노동단체/전문가 단체, 환경보호 및 기타서비스의 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20) 다른 목적별 분류에는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목적별 생산자 지출 분류(COPP: Classification of the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 목적별 개인 소비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가 있다.



를 포괄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SNA에서는 부문-특정별 목적 코딩(sector-specific purpose coding)의 원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가게봉사 시장비영리단체의 지출은 COPNI가 아니라 목적별 생산자지출 분류(COPP : Classification of the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에 분류되거나 정부의 지배를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의 지출은 정부기능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분류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적어도 세 개의 다른 목적으로 코딩되고 비영리단체가 속하는 단체에 따라 분류된다.

이와 같은 현재의 분류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IC. 개정 3(UN, 1990)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의 분류체계인 비영리단체국제분류(ICN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²¹⁾)가 개발되었다. ICNPO는 12개의 대분류와 30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고(<표 2-2>)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SNA상에서 속한 제도 부문과 관계없이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괄한다.

둘째, 분석단위는 SNA와 동일하게 사업체(establishment)단위이고 다목적 비영리단체는 개별제도단위별로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시설과 함께 연구소, 병원 등을 가지는 대학의 경우는 개별적 제도단위로 취급해야 한다.

셋째, 비록 ISIC 기초로 작성되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비영리단체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ISIC의 N분류 ‘건강과 사회사업’(Health and social work)은 대분류 3의 보건과 대분류 4의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또한 최근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포괄하기 위해 ISIC의 ‘문화, 스포츠 및 회원제기관’부문 이외에 O분류 ‘기타 지역사회, 사회 및 개인서비스 활동’을 대분류 5의 ‘건강’, 소분류 7 100의 ‘시민권 및 변호단체’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비영리단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대분류 6 ‘개발 및 주거’를 추가하였고 주된 활동이 국제적인 단체를 포괄하기 위해 대분류 9 ‘국제’를 추가하였다.

넷째, 분류기준은 주된 경제활동 단위를 이용한다. 이때 주된 경제활동은 (a) 부가가치, (b) 부가가치 이용할 수 없을 시는 총생산 또는 (c) 만약 부가가치와 총생산 둘 다 사용할 수 없을 시는 고용을 이용한다.

다섯째, 비록 경제활동 기준 분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분류 6 ‘개발 및 주거’에는 주택생산과 주택금융활동에 관여하는 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비영리단체국제분류(ICNPO)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는 <표 2-3>과 같이 연계된다.

21) '91년부터 Johns Hopkins대학의 시민사회연구센터(CCSS) 주관으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비교 프로젝트(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에서 최초로 고안하였다.

〈표 2-2〉 비영리단체국제분류(ICNPO)의 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 문화 및 오락	1 100 문화 및 예술
	1 200 스포츠
	1 300 기타 오락 및 사회단체
2 교육 및 연구	2 100 초중등교육
	2 200 고등교육
	2 300 기타 교육
	2 400 연구
3 보건	3 100 병원과 재활
	3 200 노인시설
	3 300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3 400 기타 보건서비스
4 사회복지	4 100 사회복지
	4 200 긴급구호 및 재난
	4 300 소득지원 및 유지
5 환경	5 100 환경
	5 200 동물보호
6 개발 및 주거	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 개발
	6 200 주택
	6 300 고용 및 훈련
7 법, 변호 및 정치	7 100 시민권 및 변호단체
	7 200 법률서비스
	7 300 정치조직
8 자선 중개 및 자원봉사 홍보	8 100 자선재단
	8 200 기타 자선 중개 및 자원봉사 증진
9 국제	9 100 국제활동
10 종교	10 100 종교집회 및 협회
11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11 100 기업협회
	11 200 전문가협회
	11 300 노동조합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단체	99 100 기타

〈표 2-3〉 국제비영리단체분류(ICNPO)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개정 4와의 연계

ICNPO	ISIC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설명
1. 문화 및 오락	C. 제조업	32. 기타 제조업	3290	기타 제조업 등(n.e.c.)
	J. 정보 및 통신	58. 출판활동	5811	출판사
			5813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출판
			5819	기타 출판활동
		59. 영상, 비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음향녹음 및 음악출판 활동	5911	영상, 비디오, tv프로그램 제작 활동
			5912	영상, 비디오, tv프로그램 제작 후 활동
			5913	영상, 비디오, tv프로그램 배급 활동
			5920	음향녹음 및 음악출판 활동
		60. 프로그램 및 방송 활동	6010	라디오 방송
			6021	tv방송
			6022	케이블 및 기타 구독 프로그램
	P. 교육	85. 교육	8541*	스포츠 및 여가 교육
	R. 예술, 오락 및 여가	90.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	9000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
			9101	도서관 및 기록 활동
		91. 도서관, 기록,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9102	박물관활동,역사적장소·건물의보존
			9103*	식물원,동물원및자연보존활동(동물원과수족관)
			9311	스포츠 시설 관리
		93. 스포츠 활동, 오락 및 여가 활동	9312	스포츠클럽 활동
			9319	기타 스포츠 활동
			9321	놀이공원과 테마공원의 활동
9329	기타 오락 및 여가 활동(n.e.c.)			
S. 기타 서비스 활동	94. 회원단체 활동	9493	자동차 협회 및 여행클럽의 활동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2. 교육 및 연구	M.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2. 과학연구 및 개발	7210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 및 실험 개발



ICNPO		ISIC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설명	
		7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220	사회과학 및 인류학 관련 연구 및 실험개발	
			749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P. 교육	85. 교육	8510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8521	일반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8522*	기술 및 직업중등교육 (직업 및 기술학교)	
			8522	기술 및 직업중등교육	
			8530	고등교육	
			8542	문화교육	
			8549	기타 교육(n.e.c.)	
			8550	교육지원 서비스	
			8541*	스포츠 및 여가 교육(요가 클리닉)	
3. 보건	Q. 보건 및 사회 복지 활동	86. 보건활동	8610	병원활동	
			8620	의료 및 치과 실습 활동	
			8690	기타 보건 활동	
		87. 거주간호 서비스	8710	노인시설	
			8720	정신장애, 정신건강 및 약물복용에 대한 거주간호 활동	
			8730	노인 및 장애인 거주간호 활동	
			8810*	노인 및 장애인 비거주 사회복지 (정신건강)	
		88. 비거주 사회복지활동	8890*	기타 비거주 사회복지 활동 (정신건강)	
4. 사회 서비스	N. 관리 및 지원 서비스 활동	82. 사무실 관리, 사무실 지원 및 기타 기업 지원 활동	8291	수집기관 및 신용정부기관 활동	
			8423*	공공질서 및 안전 활동 (국내 비상사)	
	O.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사회보장	84.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 사회보장	87. 거주간호 서비스	8790	기타 거주간호 활동(n.e.c.)
				8810*	기타 노인 및 장애인 비거주 사회복지 활동
			88. 비거주 사회복지활동	8890*	기타 비거주 사회복지 활동(n.e.c.)
5. 환경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산 및 축산, 사냥 및 관련 서비스 활동	0162	축산 지원 활동	
	E. 수도, 하수, 폐기물 관리 및 환경복원활동	38. 폐기물수집, 처리활동; 물질 복구	3812	위해 폐기물 수집	

ICNPO	ISIC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설명	
6. 개발 및 주택	M.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3822	위해 폐기물 처리	
		39. 복원활동 및 기타 폐기물 관리서비스	3900	복원 활동 및 기타 폐기물 관리 서비스	
		75. 수의업 관련 활동	7500	수의업 관련 활동	
		91. 도서관, 기록,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9103*	식물원, 동물원및자연보존활동	
		94. 회원단체 활동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E. 수도, 하수, 폐기물 관리 및 환경복원활동	38. 폐기물수집, 처리활동; 물질 복구	3811	비위해 폐기물 수집	
			3821	비위해 폐기물 처리	
		41. 건물 건축	4100	건물 건축(비주거용)	
		42. 토목공학	4210	도로 및 철로 건설	
			4220	공익사업 건설	
			4290	기타 토목공학사업 건설	
			43. 특수 건설 활동	4312	토지조성사업(비주거용)
		4321		전기설비	
		4322		배관, 온방 및 냉방 설비	
		4329		기타 건설설비	
		4330		건물 준공(주거용)	
		4390		기타 특수건설 활동	
		K. 금융 및 보험 활동	64. 금융활동 (보험 및 연금 펀드 제외)	6419	기타 통화중개
				6810	자가소유 및 임대자산 부동산활동
				6820	수수료 및 계약기반 부동산 활동
M.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0. 본사 활동; 경영자문 활동	7020	경영자문 활동		
		7110	건축설계 공학 활동 및 관련 기술 자문		
N. 관리 및 지원 서비스 활동	81. 건물 및 조경 활동 관련 서비스	8110	혼합 시설 지원 활동		
		8130	조경보호 및 관리 활동		
	82. 사무실 관리, 사무실 지원 및 기타 기업 지원 활동	8211	혼합 사무실 관리 서비스		



ICNPO		ISIC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설명					
			8219	복사, 문서준비 및 기타 특수 사무실 지원 활동					
			829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활동(n.e.c.)					
			P. 교육	85. 교육	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			
			Q. 보건 및 사회복지 활동	88. 비거주 사회복지활동	8810*	노인과 장애인 비거주 사회복지 활동(보호작업장)			
					8890*	기타 비거주 사회복지활동(n.e.c.)			
			S. 기타 서비스 활동	94. 회원단체 활동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7. 법, 변호 및 정치	M.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69. 법률 및 회계 활동	6910	법적 활동		
						O.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사회보장	84.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사회보장	8423*	공공질서 및 안전 활동(갱생)
								8890*	기타 비거주 사회복지활동(n.e.c.)
						S. 기타 서비스 활동	94. 회원단체 활동	9492	정치단체 활동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8. 자선 중개 및 자원 봉사	I.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활동	56.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활동	5610	레스토랑 및 이동음식 서비스 활동					
			K. 금융 및 보험 활동	64. 금융활동 (보험 및 연금 펀드 제외)	6499	기타 금융서비스 활동(보험 및 연금 펀드 활동 제외)(n.e.c.)			
					8890*	기타 비거주 사회복지활동 (자선 또는 보조활동)(n.e.c.)			
			R. 예술, 오락 및 여가	92. gambling 및 베팅 활동	9200	gambling 및 베팅 활동			
			S. 기타 서비스 활동	94. 회원단체 활동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9. 국제			9499*	기타 회원 단체 활동(n.e.c.)					
10. 종교			9491	종교단체 활동					
11.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9411	기업 및 고용주 회원 단체 활동					
			9412	전문가 회원 단체 활동					
			9420	노동조합 활동					
12. 기타분류 되지 않는 단체				ISIC의 모든 미지정 부문					

* ISIC 세분류 중 일부
출처 : UNDESA(2006), ISIC-Annex - ICNPO



제4절 비영리단체 계정 작성 방법²²⁾

1. 비영리단체 계정의 구조 및 변수

비영리단체는 크게 시장생산비영리단체와 비시장생산비영리단체로 구분한다. 시장생산비영리단체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산출물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학교, 대학, 병원 등이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동 수수료가 서비스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 시장생산자로 분류한다. 시장생산비영리단체 중 그 활동을 특정 기업에 봉사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단체를 기업봉사시장비영리단체(market NPIs serving enterprises)라고 한다. 단체 대부분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들의 협회로 설립되고 상공회의소, 농업이나 제조업 또는 유통협회, 고용주단체, 연구소 또는 실험소 등 기업단체의 통제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 비영리단체는 기업으로부터 회비 또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이전지출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시장생산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비시장생산자로 정부부문에 속한다.

비시장생산비영리단체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자로 정부통제를 받는 비영리단체와 정부통제를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비영리단체는 일반정부 부문에 속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에 분류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시장생산에 종사할 경우 법인기업으로 분류되고 비시장생산에 종사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는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되고 그 나머지 비영리단체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로 분류된다. 가계봉사비영리단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전문단체나 학회, 정당,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교회나 종교시설, 사교·문화·오락·스포츠 클럽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구성원의 이익이 아니라 박애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단체나 구회기관이 있다. 이러한 단체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계, 빈곤한 가계 등에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연구결과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 환경단체 등 집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구성된다.

22) UN(2003)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SNA체계는 비영리단체의 생산, 수입, 지출, 자산 및 자본축적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경제부문과 비교하기에 용이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시 SNA 체계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전체 SNA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통계에 대한 비영리단체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둘째, 일부 SNA에서 관례적으로 생각하는 접근방법과 비영리단체의 특정 속성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는 자원봉사 인력을 사용하고 “시장비영리단체”(market NPIs)의 비시장 산출물(non-market output)을 가지고 있다. 셋째, 비영리단체의 영향과 실적에 대한 지표로 비화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구조가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2003)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SNA체계 속에 상세(fully elaborated)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구조가 있다(상세계정). 둘째, 정치적 또는 다른 분석적 목적을 위해 경제 활동의 비화폐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 및 사회적 지표 관련 자료를 상세 비영리단체 구조에서 확대(extension)한 구조가 있다(확장계정). 셋째, 가장 필요하거나 이용 가능한 변수와 충분히 상세 비영리단체 계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사용될 수 있는 단순서식(short-form)구조가 있다(단순계정).

비영리단체 계정의 주요 변수(key variables)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 1) 비영리단체 부문과 다른 부문의 개별 제도단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핵심화폐 변수(core monetary variables)
- 2) 비영리단체와의 정부부문 거래,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물 및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추가화폐변수(additional monetary variables)
- 3) 비영리단체의 구조, 역량 및 산출물에 대한 핵심 사회·경제적 정량변수(core quantitative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 4)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정량 및 정성변수(addition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ariables)

세 번째와 네 번째 변수는 다시 비영리단체의 산출과 역량, 서비스의 사용자와 고객, 비영리단체의 소비자, 회원 및 자원봉사자 및 고용인으로서의 가구 및 개인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성과와 영향 변수로 다시 세분화 된다.

〈표 2-4〉 주요 변수 목록

변수명	상세 계정	확장 계정	단순 계정	비고
■ 핵심화폐변수				
시장산출(P.11)1) - 정부의 제삼자지불	○ ○		○ ○	판매, 수수료, 요금 등으로부터의 수입
자가최종사용산출(P.12)	○		○	
기타비시장산출(P.13)	○		○	총운영비용
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의 의제가치	○		○	
피용자보수(D.1) - 임금 및 급여(D.11) - 고용주의 사회부담금(D.12)	○ ○ ○		○	고용, 노동투입, 노동력 특징과 연결
자원봉사자의 의제평균임금	○			
중간소비(P.2)	○		○	
고정자본소비(K.1)	○		○	
(순)생산물세(D.2, D3)	○		○	생산세-생산보조금
재산소득(D.4) - 이자(D.41)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D.42) - 임료(D.45)	○ ○ ○ ○		○	재산소득 수취 및 지급
기타경상이전(D.7) - 개인기부 - 정부장려금 및 이전 - 외국장려금 및 이전	○ ○ ○ ○		○ ○ ○	이전수취 및 지급 기부, 회원 및 회원권과 연계
자본이전(D.9) - 개인기부 - 정부장려금 및 이전 - 외국장려금 및 이전	○ ○ ○ ○		○ ○ ○	
최종소비지출(P.3)	○		○	
사회현물이전(D.63)	○		○	
실제최종소비(P.4)	○		○	
총고정자본형성(P.5)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K.2)	○ ○		○ ○	비금융자산의 취득



변수명	상세 계정	확장 계정	단순 계정	비고
금융자산의 순취득(F)	○		○	금융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발생
부채의 순발생(F)	○		○	
기타자산증감(K.3-K10, K12)	○			비금융자산은 능력측정치와 연계
명목보유순익(K.11)	○			
대차대조표항목 비금융자산(AN)	○			
금융자산(AF)	○			
부채(AF)	○			
부록 : 인구	○		○	
부록 : 노동투입	○		○	
▪ 구조변수				
단체(수)	○	○	○	
임금고용자(수, FTE2))	○	○	○	피용자보수와 연계
자원봉사인력(수, FTE)	○	○		핵심변수의 자원봉사인력과 연계
회원수(수)	○	○		이전수취와 연계
회원권(수)	○	○		
기부	○	○		이전수취와 연계
▪ 산출과 역량변수				
역량과 산출의 측정	○	○		비영리단체의 산출의 화폐적 측정과 비금융자산과 연계
총산출과 총역량에서의 비영리단체의 비중	○	○		비영리단체 및 다른 부문의 산출의 화폐적 측정과 비금융자산과 연계
▪ 고객과 사용자 변수				
고객과 사용자의 신상명세서(비영리단체, 다른 부문)		○		
사용자, 고객, 회원의 참여도(비영리단체, 다른 부문)		○		
사용자, 고객, 회원의 만족도 (비영리단체, 다른 부문)		○		
▪ 영향 및 성과변수				
효율성(비영리단체, 다른 부문)		○		비영리단체 및 다른 부문의 산출, 생산성 및 비금융자산의 화폐적 측정과 연계
평등성 : 재분배 측면		○		가구소득과 연계
평등성 : 사회통합 측면		○		

주 : 1) 괄호 안은 SNA의 거래와 기타 플로우 분류와 자산 분류 코드

2) Full Time Equivalent(FTE) :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



2. 비영리단체 계정의 추가 화폐변수

비영리단체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계정에서는 SNA의 기본 변수에 추가하여야 할 세 가지 변수들이 있다. 첫째, 비영리단체의 비정부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입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변수이다. 둘째,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물을 포함하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의 노동력, 수입 및 산출의 일부인 자원봉사 인력을 포함하는 변수이다.

1) 상세한 정부 지출

비영리단체 계정에서 SNA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정부와 비영리단체간의 상세한 거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지출로부터 발생한 비영리단체의 수입을 측정하는데, 특정 조직적 활동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 조직의 일반적 미션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강제된 법적 이전금, 바우처 및 기타 제삼자의 지출 즉,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다른 조직에게 상환하기 위해 가계에 대한 간접 정부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수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2)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

1993 SNA에서 시장생산자의 산출물은 판매수입(sales revenue)에 의해 측정되었다. 하지만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시장판매에 의해 충당하는 시장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이런 산출물 측정방법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SNA 방식으로는 시장비영리단체의 시장산출물은 측정되지만 비시장산출물은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비영리단체는 시장산출물 뿐만 아니라 판매수입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 또는 기타 이전지출에 의해 비시장 산출물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기부 등에 의해 충당된 비용일부를 시장비영리단체의 산출로 측정하고 있다. 산출방법은 1993 SNA의 비시장비영리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같은 방법인 비용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한다.²³⁾ 비용이 판매액을 초과하면 비용과 판매액의 차이가 산출 되고 반대로 판매액이 비용을 초과하면 비시장 산출은 영(0)으로 간주한다.

이런 생산의 범위확장은 1993 SNA에 사용되는 자료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 비

23) 비시장 산출물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생산에 투입된 총비용을 파악하여 산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 생산세(보조금 제외)의 합계이다. 이때 정부 및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순영업잉여(net operating surplus)는 영(0)이라고 가정한다.

용이 판매를 초과할 경우, SNA에서 할당된 제도부문에 상관없이 산출물은 모든 비영리 단체의 비용으로 측정된다. 단지 기업부문의 시장비영리단체의 경우 영향을 받는데, 추가 산출물은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으로부터 투입(entries)을 요구한다. 가계봉사시장비영리단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영향을 받는다. 즉, 추가산출이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되고 비영리단체 기업으로부터의 가계로의 동일한 양의 이전은 두 제도부문의 계정이 균형(balance)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봉사시장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가산출은 지원기업의 중간소비이기 때문이다.

3) 자원봉사인력

1993 SNA에서는 자원봉사로 인해 투입된 인력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영리단체에서는 자원봉사인력이 매우 큰 생산투입요소이다. 비영리단체 대부분은 시간에 의한 자원봉사가 금전적 자원봉사보다 많다.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인력이 생산하는 산출물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실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비영리단체 부문과 다른 제도부문간의 투입구조와 비용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자원봉사인력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시간과 그에 맞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시간은 잠정 국제시간사용통계분류(ICATUS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Time-Use Statistics)(UN, 2000)에 의해 다음의 분야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 61. 건설 및 수리, 빌딩, 도로, 댐, 우물 등을 주관하는 지역공동체
- 62. 단체 축하행사 음식 등을 주관하는 지역공동체
- 63. 개인을 위해 직접적 일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을 위한 자원봉사
- 67. 개인과 그룹에 직접적으로 확대된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단, 직접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 활동은 제외

자원봉사서비스는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가치측정이 가능하다.

첫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접근방법으로 자원봉사시간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직업대신에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포기하는 기회의 가치에 대한 비용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자원봉사자의 평소 직업에 대한 임금을 이용한다. 둘째, ‘시장대체비용’(market replacement cost) 접근방법으로 자원봉사시간은 자원봉사자를 유급노동자



로 대체했을 때의 단체가 지불하는 비용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자원봉사의 잠재임금(shadow wage)으로 자원봉사가 관여하는 직업적 활동에 대한 평균총임금을 사용한다.

기회비용 접근방법은 너무 많은 관련 통계가 필요하고 또한 주어진 활동에 대한 가치는 자원봉사자의 임금잠재력에 의해 결정되어 부적절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투자의 청소행위가 사무직원의 청소행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업무시간보다는 여가시간을 절약하여 봉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에 의하면 기회비용은 자원봉사자가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에 둔다. 따라서, 동일한 무료활동에 대한 두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은 각기 다른 봉사자의 직업의 임금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시간율로 가치 측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체비용 접근방법이 기회비용 접근방법보다 선호된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UN의 「비영리단체 위생계정 핸드북」에서는 세 번째 방법으로 ‘대비적 접근방법’(fall-back approach)을 이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지역공동체, 복지 및 사회서비스 직업 분야의 평균총임금을 이용하는데 이는 자원봉사의 직업분야와 이 직업의 임금이 비슷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3. 통계표

상세계정에서의 자료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생산계정에서의 통합경제계정(integrated economic accounts)의 거래, 기타 플로우 및 스톱을 포함한다. 상세계정은 산출, 최종소비지출,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이전지불, 총고정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빌딩과 건축물, 오락, 문학 또는 예술적 원본, 골동품과 기타 예술품에서의 물량과 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유 및 취득현황도 포함한다. 확장계정에서는 핵심화폐변수에 고용, 자원봉사, 비영리단체 실체, 회원, 회원권, 산출과 능력에 대한 실물단위의 자료가 추가된다. 단순계정에서는 금융계정을 통해 추약된 계정항목을 포함한다.

계정의 통계표와 변수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

1) SNA 기준

모든 변수들은 SNA의 추계 방법을 따른다.

2)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

SNA 기준 형태에 SNA 법인부분의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을 추가함.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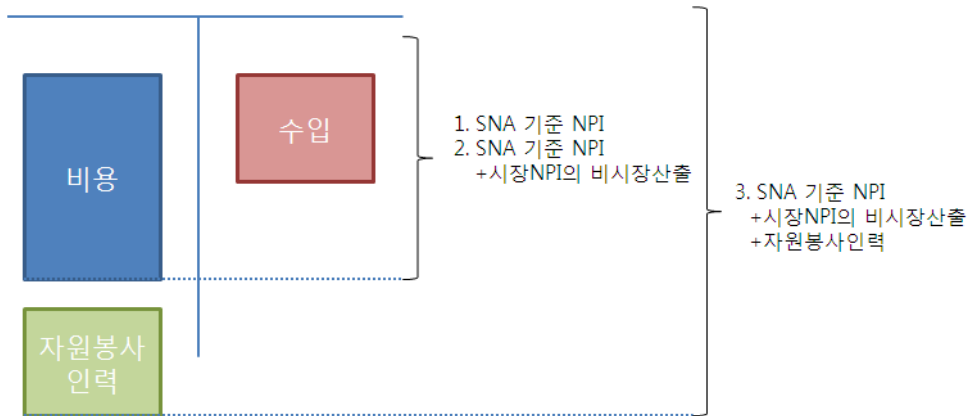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이 매겨지고 산출의 추가가치가 계정에 더해진다.

3) 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과 자원봉사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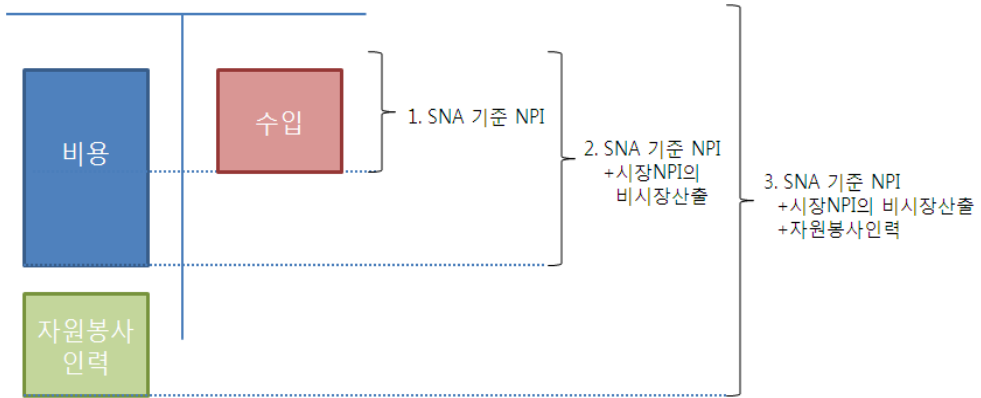
시장 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에 의제자원봉사인력가치를 더한다. 자원봉사인력의 피용자보수는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서비스 직업 부문의 평균 총임금을 대리변수로 하여 작성된다.

비영리단체계정은 6개의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표 I 은 비영리단체 부문의 총합계정이고 통계표 II는 통계표 I 를 INCPO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통계표 III는 SNA의 제도부문과 제도단위별 계정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통계표 IV는 제도부문과 제도단위별 경제 활동, 즉 ISIC, COFOG, COICOP, COPIN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표 V는 비영리단체 구조와 산출에 대한 다양한 추가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표 VI는 요약표로서 수입, 지출 등에 대한 주요변수들을 요약하여 나타낸다. 상세통계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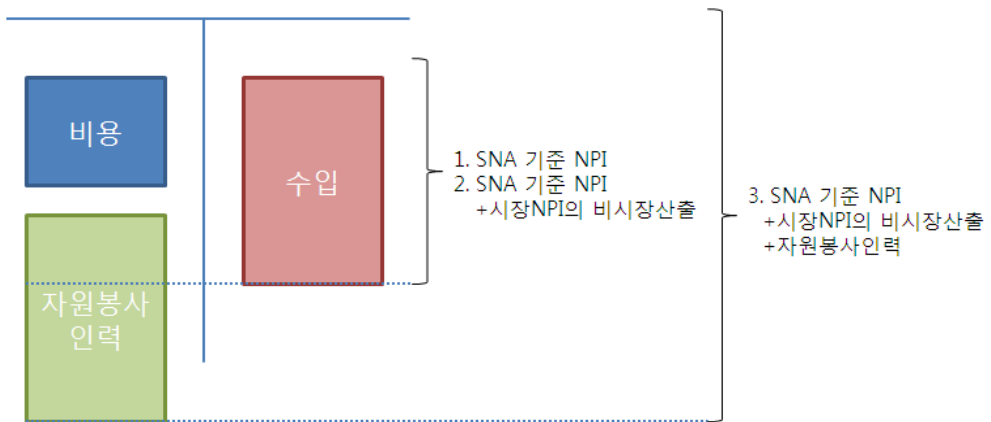
기존 SNA와는 다른 새로운 추가 변수들은 ‘SNA 거래, 기타 플로우 및 스톱’에 대한 추가변수로 생산계정의 ‘시장산출’중 ‘제3자 지불’과 제2차 소득분배계정의 ‘기타경상이전’중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및 이전’, ‘외국보조금 및 이전’ 및 자본계정의 ‘자본이전’의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및 이전’, ‘외국보조금 및 이전’ 변수이다. 또한 ‘기타 변수’로 고용과 관련하여 ‘유급’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용인수’, FTE기준 고용인수 및 피용자보수와 총피용자보수가 있다.



[그림 2-5] 비시장 NPI의 산출



[그림 2-6] 시장 NPI의 산출(비용 > 시장수입)



[그림 2-7] 시장 NPI의 산출(비용 < 시장수입)

〈표 2-5〉 통계표 1의 구조

변수	SNA 기준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자원봉사인력 및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 SNA거래, 기타 플로우 & 스톱						
I. 생산계정						
P.1. 산출						
P.11 시장산출						
그중 : 제3자 지불						
P.12 자가최종사용목적 산출						
P.13. 기타 비시장 산출						
P.2 중간소비						
B.1g 부가가치						
K.1 고정자본소모						
B.1n 부가가치(순)						
II.1.1. 소득발생계정						
B.1n 부가가치(순)						
D.1 피용자보수						
D.11 임금 및 급여						
D.12 고용주 사회부담금						
D.29 기타 생산세						
D.39 기타 생산물 보조금						
B.2 영업잉여(순)						
II.1.2. 본원소득분배계정						
B.2 영업잉여(순)						
D.4 재산소득						
D.41 이자						
D.42 법인기업 분배소득						
D.39 임료						
B.5 본원소득의 잔액(순)						
II.2. 제2차 소득분배계정						
B.5 본원소득의 잔액(순)						
D.5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D.7 기타 경상이전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및 이전						
외국보조금 및 이전						
B.6 가치분소득(순)						
II.3.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변수	SNA 기준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자원봉사인력 및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B.6 가치분소득(순)						
D.63 사회적 현물이전						
B.7 조정가치분소득(순)						
II.4.1. 가치분소득사용계정						
B.6 가치분소득(순)						
P.3 최종소비지출						
B.8 저축(순)						
II.4.2. 조정가치분소득사용계정						
B.7 조정가치분소득(순)						
P.4 실제최종소비						
B.8 저축(순)						
III.1 자본계정						
B.8 저축(순)						
P.5 총자본형성						
P.51 총고정자본형성						
P.51 재고증감						
P.53 귀중품 취득 및 처분						
K.1 고정자본소모(-)						
K.2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D.9 자본이전(수취)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및 이전						
외국보조금 및 이전						
D.9 자본이전(지급)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및 이전						
외국보조금 및 이전						
B.9 순대차						
B.1.1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 증감						
III.2 금융계정						
B.9 순대차						
F 금융자산의 순취득						
F 부채의 순발생						
III.3.1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K.3-10, 12 자산의 기타 양적 증감						



변수	SNA 기준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자원봉사인력 및 시장NPI의 비시장산출 포함	
	사용	원천	사용	원천	사용	원천
AN 비금융자산						
AF 금융자산 및 부채						
B.10.2 자산의 기타증가에 따른 순자산 증감						
III.3.2 재평가계정						
K.11 명목보유손익						
AN 비금융자산						
AF 금융자산						
B.10.3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IV.1 기초 대차대조표						
AN 비금융자산						
AF 금융자산						
B.90 순자산 증감						
IV.2 대차대조표 증감						
AN 비금융자산						
AF 금융자산						
B.10 순자산증감						
B.10.1 저축 및 자본이전						
B.10.2 자산량 기타 증감						
B.10.3 명목보유손익						
IV.3. 기말 대차대조표						
AN 비금융자산						
AF 금융자산						
B.90 순자산						
▪ 기타 변수들						
고용						
A. 유급						
1. 수						
2. FTE						
3. 피용자보수						
B. 자원봉사(수, FTE, 피용자보수)						
1. 수						
2. FTE						
3. 피용자보수(귀속가치)						
C. 총피용자보수(A3+B3)						



4.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시 이용 자료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SNA 작성 시 사용되는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에서 비영리단체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업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등록부(register)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등록부에는 단체의 i) 이름 및 주소, ii) 기업/사업체 자료와 연결하기 위한 식별번호, iii) 산업, 사업목적, 제도 및 기타 분류 정보, iv) 소득, 자산, 또는 사업체 크기 정보 v) 기타 법적 상태관련 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부는 행정등록자료나 기존의 사업체 등록부(business register)에서의 비영리단체 식별코드(flag)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모아서 작성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업무는 비영리단체 등록부를 이용하여 사업체 및 기업체 표본통계조사의 추출 틀로 사용되는 사업체등록부나 기타 다른 목록에 비영리단체 식별코드를 추가한다. 비영리단체 등록부는 등록부 작성에 사용되지 않았던 행정자료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또한 사용된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위성계정의 첫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통계표의 대부분이 기존의 자료로부터 작성되고 추가 자료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업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및 특정자료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중 어떤 자료는 현존하지만 국민계정 작성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가적 자료수집이 필요할 수 있다.

네 번째 업무는 확장계정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고용단체 별 및 관계별(이용자 또는 기타 관계)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는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기술 및 직업별로 분류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 이용자를 인구적 특성 또는 사회계층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계방식을 통해 다양한 가계그룹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행정자료인 세금자료로부터 연계된 고용식별번호(EINs) 및 사회보장번호(SSNs)를 사용함으로써 마이크로자료 수준을 만들 수 있다.

제5절 해외사례

1. 국제사회

1991년부터 Johns Hopkins대학의 시민사회연구센터(CCS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y) 주관으로 비영리단체 계정에 대한 비교연구 프로젝트(CNP: the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가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 및 작성이 추진되었다. 비교연구 프로젝트는 비영리부문을 이해를 돕고 비영리부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비영리부문의 범위, 구조, 재정 및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45개국²⁴⁾의 시민사회단체, 자선(philanthropy) 및 자원봉사(volunteering) 관련 자료 및 연구결과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프로젝트팀은 2002년 UN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각국의 통계전문가들과 협력하여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UN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2003년 발간하였다. 이 핸드북은 국민계정체계의 독립된 제도부분으로서 비영리단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UN통계국(UNSD : UN Statistics Division)의 승인을 받아 각국에 위성계정 작성을 독려하고 작성방법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을 통해 현재 33개국²⁵⁾이 핸드북에 따라 위성계정을 작성하거나 일부분 작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15개국이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공표하고 있다.<표 2-6>

24)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케냐, 한국,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간다, 영국, 미국

25)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케냐, 키르기스스탄, 한국, 말리,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태국, 우간다, 미국,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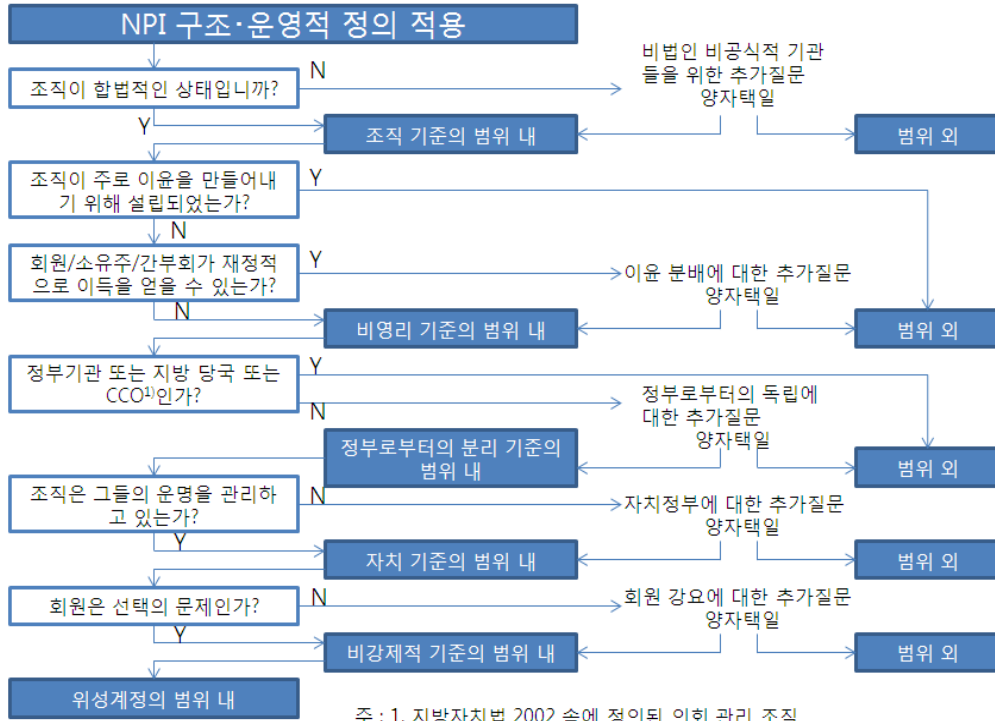


〈표 2-6〉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국가

작성국가	작성기관	작성기간	작성연도	비고
노르웨이	통계청(SN)	2006~2009	2010	매년작성
뉴질랜드	통계청(SN)	2004	2007	정기적 작성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원 (INEGI)	2008~2010	2012	
모잠비크	통계청(NIS)	2003	2009	
브라질	통계청(IBGE)	2002	2010	
벨기에	벨기에중앙은행 (NBB)	2000~2008	2010	정기적 작성
이스라엘	통계청(CBS)	2002	2008	
일본	내각부(CO) (사회경제연구소 위탁)	2003	2006	OECD 통계위원회에서 발표
체코	통계청(CSO)	2005~2009	2012	'12년에 개정
캐나다	통계청(SC)	1997~2007	2004~2009	매년작성
키르기스탄	통계청(NSC)	2008	2011	
태국	국가경제사회발전 위원회(NESDB)	2006~2008	2010	
포르투갈	통계청(SP)	2006	2012	
프랑스	국가통계경제연구소 (INSEE)	2002	2006	
호주	통계청(ABS)	2000/2007	2002/2009	정기적 작성

2. 뉴질랜드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은 2004년에 2007년 기준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작성하였고 현재 2010년 기준 계정 작성을 검토 중에 있다. 비영리단체의 정의는 UN에서 제시한 5개 기준에 적합한 제도단위를 비영리단체로 정의하였다. 비영리단체인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림 2-8]과 같은 5개 기준별 의사결정도를 이용한다.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2004)

[그림 2-8] 의사결정도

비영리단체의 분류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에 의해 정해지는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여 UN에서 권고하는 국제비영리단체분류(ICN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Non-Profit Organizations)를 따라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Non-Profit Organizations)를 작성하였다(<표 2-7>). INCPO와 차이가 나는 부문은 교육 및 연구(02)에서 유아교육이, 개발 및 주택(06)에서 마우리족 통치조직이 추가되었고 지원및보조서비스가 각 분류에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개의 경제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은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하나의 범주에 분류된다. 이때 주된 경제활동은 비영리단체의 GDP 대한 부가가치(value added) 비중이 가장 높은 활동이 되고 만약 부가가치 비중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총산출(gross output) 그리고 부가가치 및 총산출 둘 다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고용자수(employment)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표 2-7〉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

대분류	중분류	설명
01. 문화 및 오락	01 100 문화 및 예술	매체 및 정보통신, 시각예술, 건축학 및 제도술, 공연예술, 역사, 문학, 유산 및 인본주의사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01 200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의 제공, 트레이닝, 체력단련, 스포츠 시합 및 경기
	01 300 기타 오락 및 사회단체	개인 및 지역사회에 후생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또한 회원 및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조직인 서비스 단체도 포함.
	01 999 문화와 오락 스포츠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2 교육 및 연구	02 110 유아교육	유아교육 제공 단체(아이 돌보기 서비스 포함)
	02 120 초중등교육	초중등 수준의 학교교육
	02 200 고등교육	고등 교육, 학위수여. 경영학부, 법학 및 의학부 포함.
	02 300 기타 교육	특별히 취업에 적합하도록 맞춰진 직업 및 기술훈련. 또한 단체가 교육 및 훈련뿐 아니라 정규 교육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는 성인/평생 교육 포함.
	02 400 연구	과학 및 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또는 의학 분야의 연구 단체
	02 999 교육과 연구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3 보건	03 100 병원과 재활	부상, 유전적 결함 또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리치료 및 다른 재활 치료를 포함하는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03 200 노인시설	입원환자 요양 간호 및 거주 간호, 심하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보호시설, 호스피스 서비스.
	03 300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정신병원, 정신질환의 외래환자 치료, 예민한 정신건강 상태에서 외래환자 서비스 및 상담.
	03 400 기타 보건서비스	공중위생 증진 및 보건 교육, 외래환자 건강치료, 외래환자 재활 의료서비스 및 응급 의료서비스
	03 999 보건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대분류	중분류	설명
04 사회복지	04 100 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및 교육, 청소년 서비스 및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자립 및 기타 인적서비스
	04 200 긴급구호 및 재난	재난/비상사태 예방 및 제어, 임시 대피처 및 난민 도움
	04 300 소득지원 및 유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지원, 식량, 의복, 차량 및 기타 지원방식을 제공하는 단체.
	04 999 사회복지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5 환경	05 100 환경	오염 감소 및 통제, 천연자원 보존 및 보호, 환경미화 및 녹지를 촉진하는 단체
	05 200 동물보호	동물 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 보존 및 보호, 가축 서비스와 관련된 단체
	05 999 환경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6 개발 및 주택	0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 개발	지역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경제 및 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일반국민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능력
	06 120 마오리족 (tangata whenua) 통치조직	마오리족(tangata whenua) 통치조직
	06 200 주택	개발, 건축, 관리, 임대, 주택 용자 및 재건과 관련된 단체. 또한 주택지원과 관련된 단체.
	06 300 고용 및 훈련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과 지도를 제공 및 지원하고, 직업 훈련과 고용을 통해 자급자족 및 소득창출을 촉진하는 단체.
	06 999 개발 및 주택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7 법, 변호 및 정치	07 100 시민 및 변호단체	변호단체, 시민권리, 도덕 및 시민 단체
	07 200 법률서비스	법률 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정책, 범죄자 갱생, 범죄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호 협회
	07 300 정치조직	행정관에 특정후보의 순위를 지원하는 활동 및 서비스
	07 999 법, 변호 및 정치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대분류	중분류	설명
08 자선, 기금 및 자원봉사홍보	08 100 자선재단	개인 자선재단
	08 200 기금단체	기금단체
	08 300 자원봉사홍보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 및 찾아주고,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단체.
	08 999 자선, 기금 및 자원봉사홍보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9 국제	09 100 국제활동	교환/친선/문화 프로그램, 개발원조 연계, 국제 재난 및 구호단체, 국제 인권 및 평화.
	09 200 국제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10 종교	10 100 종교집회 및 협회	교회 및 신앙을 고취하고 종교서비스와 의례를 관리하는 유사단체.
	10 999 종교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11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11 100 기업협회	기업 지사의 이익을 촉진, 규제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단체.
	11 200 전문가협회	전문적인 관심을 촉진, 규제하고 보호하는 단체.
	11 300 노동조합	고용인의 권리와 이익을 촉진, 보호 및 규제하는 단체.
	11 999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단체	99 100 기타	농업,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은 숙박시설 및 소매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전형적이지 않거나 충분히 다른 곳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타 활동.
	99 444 미상	
	99 555 응답거부	
	99 777 응답불명	
	99 888 범위 외	
	99 999 무응답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2004)

분류과정은 먼저 뉴질랜드 사업체등록명부 모집단(business frame population)에 있는 비영리단체 자료의 표준산업분류(ANZSIC)²⁶⁾ 및 비영리조직 산업분류(NZSCNPO)와 연계된다. 연계되지 않고 남은 것은 주요 단어(keyword)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나머지는 수작업을 통해 분류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체등록명부의 비영리단체 3%이하만이 ‘기타 분류되지 않는 그룹’에 속하였다. 국세청(Inland Revenue)의 행정데이터베이스(administrative database)와 기업청(Companies Office)의 등록(register) 자료도 유사한 방법으로 분류된다.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시장가격(또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단위이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비시장(non market)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서비스를 무상 또는 시장가격이하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비영리단체가 시장생산자이지만 구조·운영적 정의(structural-operational definition)를 충족시키면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비영리단체 중 시장생산자로 분류되는 것은 1) 대부분의 기업협회(business associations); 2) 게임신탁(gaming trusts); 3) 대부분의 비영리병원(non-profit institution hospitals); 4) 경마단체(racing clubs)이다.²⁷⁾ 이들은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를 내기위해 시장가격으로 산출물을 판매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업잉여는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분배된다.

비영리단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료는 뉴질랜드통계청의 사업체명부 모집단 자료이다. 사업체 명부는 i) 한해 상품및서비스세(GST) 또는 판매액이 30,000달러 이상, ii) 고용인이 1명이상, iii) IR10 소득(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금, 총소득)이 40,000달러 이상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명부에서 사업형태, 제도부문 및 산업활동의 세 가지가 비영리단체 분류에 이용된다. 뉴질랜드산업분류(NZSIC)에서는 비금융생산자기업, 금융기업, 일반정부, 가계봉사비영리단체 및 가계 5개의 제도단위가 있다. 이중 가계봉사비영리단체(NPISHs: Non-Profit Institutional Serving Households)는 모두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나머지 부문 중 법인협회(incorporated societies)의 경우(예를 들어, 경마단체, 기업협회, 산업훈련조직 등)는 정부의 통제하의 조직이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만약 나머지 부문중 비법인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경우는 비영리단체여부가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기부회사는 포함되지만 거래(trading) 및 가족(family) 신탁은 제

26)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산업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7) 기업협회는 정부가 아닌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면 비영리단체이다. 게임신탁은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영업잉여를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을 매긴다. 영업잉여가 산업참가자에게 다시 제공되는 경마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시장 또는 시장근접 가격을 요금으로 책정하는 시장생산자이다. 이중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가격보다 낮게 요금을 책정하는 무료병원은 비시장생산자로 분류된다.



외된다.

사업체 명부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영리단체만을 포함하고 있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원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는 국세청과 기업청의 등록자료이다. 국세청자료는 자격신탁(qualifying trusts), 법인협회 및 비법인협회로 분류되어 있다. 기업청은 자선신탁과 법인협회의 목록을 제공한다.

사업체 명부, 국세청 및 기업청 등록자료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체 명부에 있는 단체를 국세청 및 기업청 등록자료에서 제거한다. 이는 사업체 명부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청의 등록된 법인협회 및 자선신탁은 국세청의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되는 비영리단체의 수는 과대²⁸⁾ 또는 과소추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및 기업청 행정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통계청의 사업체 명부 자료처럼 사업체가 폐업 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세청의 행정자료는 자선신탁을 거래 또는 가족 신탁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선신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청 자료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행정자료는 수천 개의 비법인 협회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판매 및 구매 상품및서비스세(GST) 등 관련 세금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수의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이윤의 일부로서 상품및서비스세를 보고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별 비영리단체가 상품및서비스세를 영(0)으로 보고하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지 또는 국세청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에 여전히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따라서 비법인협회는 과대추정될 수 있다.

고용인의 수와 임금은 세금자료로부터 매달 수집된다. 고용인수는 국세청의 행정자료 DB로부터 얻어진다.

매년 조사되는 기업체조사(enterprise survey)는 재정적 성과와 재정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체조사에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별도의 조사표를 배포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조사표는 수입, 지출, 재무상태, 고정자산 및 기타세부사항 부문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각 부문별로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2-8>) 산출변수는 소득, 지출, 이윤, 고정 자산 구매 및 자기자본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 총산출 및 총고정자본 형성과 같은 국민계정의 구성변수를 추계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28) 모든 자료원에서 중복된 자료를 모두 제거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의 모든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8〉 뉴질랜드 기업체 조사의 비영리조직 조사표 항목

<p>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은 정부 계약 소득 ▪ 받은 정부 보조금 ▪ 모든 기타 받은 정부 소득 ▪ 회비 소득 ▪ 관련된 또는 연계된 조직에서 받은 양도 ▪ 기업 및 기타 조직에서 받은 기부 ▪ 기타 받은 기부 ▪ 후원 및 비정부 보조금의 소득 ▪ 받은 이자 ▪ 받은 배당 ▪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서의 수익 ▪ 모든 기타 운영 수익 ▪ 영업 외 항목의 수익 ▪ 총소득 	<p>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또는 연계된 조직으로 이전 ▪ 가구 또는 개인 기부 ▪ 기타 기부 ▪ 다른 사람들의 보조금 또는 후원 ▪ 지불된 급여 및 임금 ▪ 지불된 이자 ▪ 사업 보험료 ▪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 ▪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 모든 기타 영업 지출 ▪ 영업 외 항목의 지출 ▪ 총지출
<p>재무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자산 ▪ 주식/재고자산 ▪ 토지 ▪ 기타 고정 자산 ▪ 모든 기타 유동 및 비유동 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누적된 자금 균형 	<p>고정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동안 토지 및 기타 고정 자산 (원가로) 추가 ▪ 회계연도 동안 토지 및 기타 고정 자산 (판매가로) 처분
		<p>기타 세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세부사항

종교단체는 기업체조사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업체조사자료가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주요한 자료원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기여부문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기존 연구자료 및 기업청이 보유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추정되고 교회의 총수는 비전네트워크(vision network)의 교회등록부를 이용한다.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단체는 매우 복잡한 행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교파는 지역 및 전국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단체들 간의 통화 및 노동의 이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계정의 법적 구조는 보험, 투자 및 고용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법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 단체수는 사업체 명부의 법적 실체가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결정
- 명백히 한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실체는 그 기관의 일부로 취급하고 금융 플로우는 순계(netted out)되고 통계기관의 일부로 기록



자원봉사인력의 노동시간에 대한 가치는 1998/99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모든 활동은 ‘수면 및 교제’를 제외한 8개²⁹⁾의 기관코드류별 총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12세 이상 인구의 평균자원봉사시간을 계산한다. 2001년 12세 이상 인구의 총자원봉사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998/99년의 12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자원봉사시간에 2001년 12세 이상 총인구를 곱하여 외삽한다. 이는 자원봉사시간은 일정하고 자원봉사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1999~2001년까지 이용 가능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평균 자원봉사자별 근무시간도 2001~2006년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에서는 2001~2006년간 자원봉사자수는 2.1%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2001~2006년간 자원봉사자수의 2.1%증가는 2004년도의 값으로 모형화된다. 활동형태는 1998/9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하에 자원봉사자수의 모형결과 증가율은 자원봉사자별 평균근로시간에 곱하여 매년 총자원봉사시간을 구한다.

뉴질랜드 비영리단체 계정은 생산계정, 소득 및 지출계정, 부분적 자본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소득원천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 정부계약, 도박서비스 및 회원회비 및 기업협회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이다. 비영리단체 계정의 요약표 및 제도 부문별 비영리단체표는 [그림 2-9] 및 [그림 2-10]과 같다.

	SNA ⁽²⁾ -based	Extension 1 ⁽³⁾	SNA ⁽²⁾ -based plus extension 1	Extension 2 ⁽⁴⁾	Total
Non-profit institutions satellite account					
\$(000)					
Production account					
Gross output	7,119,834	82,235	7,202,068	3,311,970	10,514,038
Sales of goods and services	4,869,708	...	4,869,708	...	4,869,708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2,250,125	82,235	2,332,360	3,311,970	5,644,329
Intermediate consumption	3,479,672	...	3,479,672	...	3,479,672
Value-added	3,640,162	82,235	3,722,396	3,311,970	7,034,366
Compensation of employees	2,611,090	...	2,611,090	...	2,611,090
Volunteer labour valuation	3,311,970	3,311,970
Taxes on production	227,676	...	227,676	...	227,676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401,680	...	401,680	...	401,680
Operating surplus	399,715	82,235	481,950	...	481,950
Income and outlay account					
Income	3,566,252	82,235	3,648,487	3,311,970	6,960,456
Operating surplus	399,715	82,235	481,950	...	481,950
Investment income	478,107	...	478,107	...	478,107
Interest received	345,971	...	345,971	...	345,971
Dividends received	132,135	...	132,135	...	132,135
Current transfers	2,688,430	...	2,688,430	3,311,970	6,000,400
Donations received	1,905,396	...	1,905,396	3,311,970	5,217,365
Government grants	758,829	...	758,829	...	758,829
Net non-life insurance claims	24,206	...	24,206	...	24,206
Outlays	3,073,831	82,235	3,156,066	3,311,970	6,468,036
Donations paid	684,746	...	684,746	...	684,746
Net non-life insurance premiums	42,691	...	42,691	...	42,691
Interest payments	96,270	...	96,270	...	96,270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2,250,125	82,235	2,332,360	3,311,970	5,644,329
Savings	492,421	...	492,421	...	492,421
Capital account					
Source of funds	492,421	...	492,421	...	492,421
Savings	492,421	...	492,421	...	492,421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401,680	...	401,680	...	401,680
Capital accumulation	628,056	...	628,056	...	628,056
Net lending/borrowing	266,045	...	266,045	...	266,045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2004)

[그림 2-9] 비영리단체 계정 요약표

29) 1. 마우리족 기관공동체, 2. 장애인 보조 및 보건관련 서비스, 3. 사회적 지원 및 보조, 4. 교육, 5. 공동체 안전 및 보호, 6. 오락 및 여가, 7. 회원혜택그룹, 8. 기타

	Institutional sector		Total
	Non-financial corporations ⁽¹⁾	General government and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²⁾⁽³⁾	
Non-profit institutions satellite account			
\$(000)			
Production account			
Gross output	2,024,390	5,095,444	7,119,834
Sales of goods and services	2,024,390	2,845,319	4,869,708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	2,250,125	2,250,125
Intermediate consumption	976,139	2,503,532	3,479,672
Value-added	1,048,250	2,591,912	3,640,162
Compensation of employees	348,558	2,262,532	2,611,090
Taxes on production	189,474	38,203	227,676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139,358	262,322	401,680
Operating surplus	370,860	28,856	399,715
Income and outlay account			
Income	463,830	3,102,423	3,566,252
Operating surplus	370,860	28,856	399,715
Investment income	45,849	432,257	478,107
Interest received	33,528	312,443	345,971
Dividends received	12,321	119,814	132,135
Current transfers	47,121	2,641,310	2,688,430
Donations received	43,062	1,862,334	1,905,396
Government grants	100	758,730	758,829
Net non-life insurance claims	3,959	20,246	24,206
Outlays	320,461	2,753,371	3,073,831
Donations paid	293,380	391,366	684,746
Net non-life insurance premiums	6,983	35,708	42,691
Interest payments	20,099	76,172	96,270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	2,250,125	2,250,125
Savings	143,370	349,052	492,421
Capital account			
Source of funds			
Savings	143,370	349,052	492,421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139,358	262,322	401,680
Capital accumulation	114,475	513,582	628,056
Net lending/borrowing	168,253	97,792	266,045

출처 : Statistics New Zealand(2004)

[그림 2-10] 제도부문별 비영리단체 계정

제6절 이용가능 통계 현황

비영리단체 계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통계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용가능 통계는 크게 통계조사를 통해 작성된 자료와 행정적 업무 수행 과정 중 생성된 행정자료가 있다. 비영리단체 계정 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비영리단체 명부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가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계정작성 시 필요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통계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 통계조사

가.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1년에 2010년 기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종사자수가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체이고 상근종사자나 고정시설이 없는 사업체는 제외되었고 또한 개인 농가, 임가 및 어가, 군부대,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 내 고용활동 등도 제외되었다. 조사항목은 15개 형태의 조사표³⁰⁾를 이용하여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등의 공통항목과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영업기간, 출하 및 재고액 등의 특성항목으로 나누어 20개 내외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경제총조사 자료는 비영리단체 명부 작성 시 가장 필요한 자료이며 비영리단체의 매출액, 영업비용 등 재정사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경제총조사의 사업체중 비영리단체는 조직형태 중 회사이외 법인 및 비법인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 조직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5개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조직체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회사이외의법인은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법무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농협, 상공회의소 등)이다. 비법인단체는 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중학교, 국립대학 등 정부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표 2-9〉 조사표 항목

공통항목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창설연월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형태
· 사업의 종류	·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 전자상거래 여부
· 사업실적	· 유·무형자산	· 녹색산업 활동 여부 ¹⁾

30) 15개 조사표는 조사표 1 「4인 이하 개인사업체·비법인단체용」, 조사표 2 「B.광업, C.제조업」, 조사표 3 「F.건설업」, 조사표 4 「G.도매업」, 조사표 5는 「H.운수업」, 조사표 6 「I.숙박 및 음식업」, 조사표 7 「K.금융업」, 조사표 8 「A.농업, 임업 및 어업/E.하수·폐기물 처리/I.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L. 부동산업 및 임대업/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조사표 9 「P.교육서비스업/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조사표 10 「본사조사표」, 조사표 11 「D.전기업」, 조사표 12 「D.가스업」, 조사표 13 「D.증기 및 온수공급업」, 조사표 14 「D.수도사업」 및 조사표 15 「O.공공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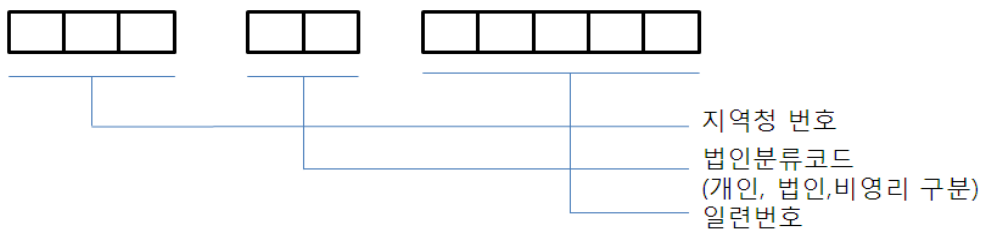
특성항목	
산업대분류	조사항목
농림어업 등 ¹⁾ (A, E, K, L, S)	· 영업기간
광업·제조업(B, C)	· 근무형태별 근로자 수 · 조업기간 ·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재고액 · 주요 사용 원재료명
	· 주요 생산공정 · 원재료로 쌀 소비여부
건설업(F)	· 영업기간 · 근무형태별 근로자 수 · 신재생에너지
도·소매업(G)	· 영업기간 · 사업체건물(매장) 연면적 ·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 체인점 가입여부
운수업(H)	· 근무형태별 근로자 수 · 육상운송 차량 보유 · 창고보유 및 보관실적
	· 연료비
숙박·음식점업(I)	· 영업기간 · 사업체 건물 연면적 · 객실 및 객석 현황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J)	· 영업기간 · 연구·기술직종사자 현황 · 직능별 종사자 수
전문·과학·기술(M), 사업시설·사업지원(N)	· 영업기간 · 연구·기술직종사자 현황
교육서비스업(P)	· 영업기간 ·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 외국어 전용 강좌
보건·사회복지(Q)	· 영업기간 · 직능별 종사자 수
예술·스포츠·여가(R)	· 영업기간 · 이용인원(고객) 수
본사조사표 (기업체단위)	· 결산 마감월 · 기업 내 조직 · 매출액(수입액) 내역
	· 국내 사업체 명부

주 : 1) 농림어업 등 : 농림어업(A), 하수·폐기·원료재생·환경복원(E), 금융보험(K), 부동산·임대(L),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S)

2) 녹색산업 활동 여부 : 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음식점업(I), 금융보험업(K), 부동산·임대업(L), 교육서비스업(P), 보건·사회복지(Q), 예술·스포츠·여가(R),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S)은 제외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영리단체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를 파악하여 비영리단체 포괄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비영리단체가 있어 개별 사업체 현황 파악하여 비영리단체 추출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3자리는 지역청 코드, 다음2자리는 법인분류 코드 및 마지막 5자리는 일련번호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법인분류코드는 개인, 법인 및 비영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분류코드별 의미는 [그림 2-11]과 같다. 비영리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체는 ‘코드 82 비영리법인’과 ‘코드 83 학교법인 및 지자체’를 가진 사업체이다. 하지만 이 코드를 가진 모든 사업체가 비영리단체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사업체의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비영리단체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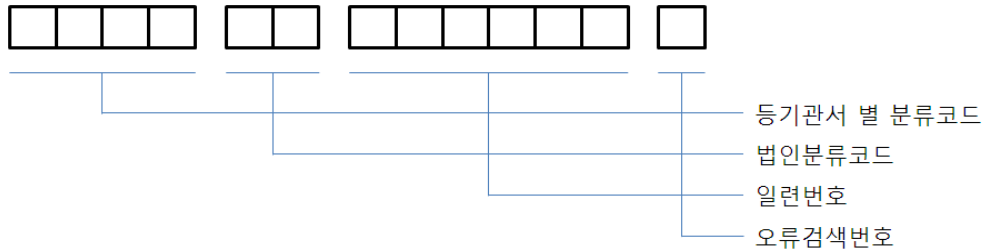


코드	설명
81	영리법인
82	비영리법인
83	학교법인, 지자체
84	외국법인
85	지점법인
86	서울경기의 영리법인
90-99	개인면세사업(쌀, 고기, 어물, 치과, 의원 등)

[그림 2-11]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4자리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다음2자리는 법인분류코드, 그다음6자리는 일련번호(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 및 마지막 1자리는 오류검색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법인분류코드는 각 근거법

에 의한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며 법인분류코드별 의미는 [그림 2-12]와 같다. 비영리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체는 민법법인과 특수법인 중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11	특수법인	농업협동조합법	단위농업협동조합	36	
		합병회사	12			특수농업협동조합(양잠협동조합)		
		합자회사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한회사	14			축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37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21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재단법인	2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	38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32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의료법	의료법인			33		수산물제조업협동조합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			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법	특별법에 의한 은행			35		어업협동조합
						어촌계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특수법인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중앙회	39	특수법인	변호사법	법무법인	46
		산림조합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산림계			대한상공회의소		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별중소기업협동조합	40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업종별)			자동차유수사업법	자동차유수사업조합	4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동차유수사업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41		금융협동조합법	단위금융협동조합	50
		신용협동조합연합회				특수금융협동조합	
	행정안전부화재보험법	행정개발조합	42	기타	공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타	71	
		행정개발조합연합회			(기타분류 할 수 없는 법인)		
		행정진흥공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42		외국법인	주식회사	81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마을금고)				합명회사	82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연합회		44			합자회사	83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직장별·지역별·직종별)	45
기타	85						

[그림 2-12]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나. 생활시간조사

비영리단체 계정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재 통계조사 중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작성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에서 얻을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의 가계위성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작성 목적이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9월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04년 및 2009년 총 세 번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9년 기준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대상은 총 8,100가구 중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이고, 조사항목은 가구관련사항(4개), 개인관련사항(17개), 시간일지(10분 간격) 및 생활시간사용만족도(1개)이다. 행동분류체계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및 여가생활시간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자원봉사 항목은 여가생활시간 중 대분류 6의 ‘참여 및 봉사활동’에서 중분류 63 ‘자원봉사’ 시간에 나타난다.<표 2-10>

<표 2-10> 자원봉사의 행동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 참여 및 봉사활동	S63 자원봉사	S631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S632 자녀교육 관련
		S63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S634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S639 기타 자원봉사(헌혈 무료상담 등)

2. 행정자료

정부기관의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³¹⁾는 통계적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절감,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의 정확성 향

31) 행정자료는 통계법 제24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라고 정의된다.

상 등을 위해 현재 기존 통계조사의 보완 및 대체항목 또는 사후 자료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자료는 '09년 2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11년 7월 현재 법인세자료, 고용보험자료, 법인등기자료 등 113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활용중이며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8종³²⁾의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다.

1) 법인세 자료

이중 비영리단체 명부작성, 비영리단체의 산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현재 '10년 말 기준자료가 입수되어 있고 법인의 매출액, 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표 2-11〉 법인세 통계청 입수 항목

자료원(서식기준)	항목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유동자산 등 56항목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현금 및 예치금 등 27항목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매출액 등 104항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영업수익 등 102항목
부속명세서	
1. 제조원가명세서	· 재료비 등 35항목
2. 공사원가명세서	· 재료비 등 34항목
3. 임대원가명세서	· 급여 등 18항목
4. 분양원가명세서	· 재료비 등 35항목
5. 운송원가명세서	· 재료비 등 32항목
6. 기타원가명세서	· 재료비 등 33항목

32) 기업정보자료 2종(한국신용평가 및 대한상공회의소), 법인등기자료(법원행정처), 사업자등록자료/부가가치세 신고자료/법인세, 신고자료/사업자현황신고서/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일용근로자임금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건축물대장(국토해양부), 주민등록부(행정안전부), 외국인등록자료(법무부), 농업경영체등록자료(농림수산식품부), 연금·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공단,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자료(건강보험관리공단)



2) 공익법인공시자료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제50조 3항에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의무제도 도입하였다. 따라서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2011년 7월 세법의 개정으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공시대상에 추가하였다.

공시시스템에 수록되는 사항은 기본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합계), 손익계산서(공익사업) 및 손익계산서(수익사업) 총 6개의 통계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2〉 공익법인공시자료 수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항 	
1. 기본사항	공익법인명, 사업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공익사업유형, 설립근거법
2. 자산보유현황	총계,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4. 고유목적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월별, 수입, 지출, 잔액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서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주식명, 보유주식 수, 주식가액(장부가액), 보유경위[출연, 유상 취득, 기타], 배당현황, 비고
2. 보유주식 변동사항	일자, 변동사유, 주식명, 주식 주, 주식가액(장부가액), 관계(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주식명, 주식 수, 보유비율 [총발행주식, 보유주식 수, 보유비율], 비고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1. 출연자	성명, 출연재산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 대차대조표	
1. 유동자산	당좌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기타],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기타], 유형자산[토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비품(감가상각누계액), 기타],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선급금, 보증금, 기타]
3. 부채총계	유동부채[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유동성장기부채, 총당부채, 미지급금, 기타],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미지급금)(퇴직연금운용자산), 기타충당부채, 장기선수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대보증금, 기타]
4. 순자산총계	제약이 없는 순자산(이월금, 적립금 등),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기부금, 기금),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기본재산)
▪ 손익계산서(공익사업)	
1. 사업수입	
2. 사업비용	
3. 사업외수입	
4. 사업외비용	
5. 순자산증감	
▪ 손익계산서(수익사업)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4.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기타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기타영업외비용
6. 법인세비용	
7. 순자산증감	
▪ 손익계산서(합계)	
1. 수입합계	공익사업 합계, 수익사업 합계, 기타
2. 비용합계	공익사업 비용합계, 수익사업 비용합계(매출원가), 기타
3. 법인세비용	
4. 순자산의 증감	



제5절 결론 및 제언

비영리부문은 최근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단체 규모, 기부금 규모, 지출 및 수입구조, 자원봉사 규모 등 경제적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은 현재의 국민계정체계에서 부문적으로만 파악되었던 비영리부문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의 접근방법이외에 자원봉사인력, 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 등 비영리부문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역할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따라서 1991년부터 Johns Hopkins대학에서 비영리단체 계정에 대한 비교연구 프로젝트(CNP)가 시작되면서 비영리부문 관련 연구 및 계정작성이 추진되었고, 이후 UN이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2003)을 발간하면서 각 국에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독려한 결과 현재 뉴질랜드, 캐나다 등 15개국이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작성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고 관련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기초통계인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은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관련 통계 작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부 비영리단체의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부족, 관련 정부기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비영리단체의 개념, 종류, 분류, 계정의 기본 구조 및 필요 변수 등을 파악하고 UN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2003)에서 제시하는 관련 통계표 및 이용 가능 자료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작성사례로서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뉴질랜드의 작성 현황도 파악하고 현재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가능 기초통계를 파악하였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조직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비영리단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UN의 핸드북에서는 구조·운영적 정의(structural-operational)로써 ① 조직화(organization), ② 비영리 및 영리미배분(not-for-profit/non-profit-distribution), ③ 정부와 조직적으로 독립(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government), ④ 자치적 운영(self-governing) 및 ⑤ 자발적 참여(non-compulsory)의 5개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직을 비영리단체라고 정의하였다.

비영리단체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기초한 12개의 대분류와 30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단체국제분류(ICNPO)에 따라 분류된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비영리단체 분류를 구축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구조는 국민계정체계상의 5개 기본계정(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및 대차대조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료의 이용가능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될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와는 달리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서는 기본 SNA기준에 따른 계정표 이외에 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물과 자원봉사인력 가치를 포함하여 계정표를 확장하여 작성한다.

비영리단체 계정개발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명부작성이 가장 우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UN의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핸드북」(2003)에서 제시한 정의 기준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정의하고 경제총조사, 법인세자료, 각 행정기관 소유 공익법인 목록 등 기존의 이용 가능한 통계 및 행정자료를 파악하고 이들 자료들을 연계하여 비영리단체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명부를 작성한 뒤에는 수입, 지출 등 재무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추가 통계조사 등을 통한 명부 보완 및 계정 작성에 필요변수들을 추가로 수집하여야 한다.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개발은 계정 작성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기존 통계자료들의 검토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 총수, 민간기부금, 정부보조금, 자원봉사자 수 등 관련 통계의 개발 및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의 개발은 우리나라 현실상 기존 이용 통계자료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개발을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기(1999), “한국 비영리단체(NP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37(1)
- 박태규(2006), “한국 비영리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연구”
- 통계청(2011), “2010년 경제총조사 조사지침서”
- 통계청(2011), “2009년 생활시간조사 직무편람”
- 통계청(2011), “행정자료 입수 및 기초점검 직무편람”
-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 EUROSTAT(1995), “1995 European System of Accounts”
- Statistics New Zealand (2004), “Non-profit Institutions Satellite Accounts”
- UN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UN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UN (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UNDESA (2006), Meeting of the Technical Subgroup of the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New York, ISIC : Annex - ICNPO



부록

1. ICNPO 와 COPNI 연계

INCPO 분류	설명	COPNI 분류	설명
1. 문화 및 오락			
1 100	문화 및 예술	03.2*	문화서비스
1 200	스포츠	03.1*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1 300	기타 오락 및 사회단체	03.1*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2. 교육 및 연구			
2 100	초중등교육	04.1	유아 및 초등교육
		04.2	중등교육
2 200	고등교육	04.3	중등 과정 후, 3차가 아닌 교육
		04.4	3차 교육
2 300	기타교육	04.5*	수준별로 정의할 수 없는 교육
		04.7*	기타 교육서비스(n.e.c.)
2 400	연구	02.5*	보건 연구개발
		04.6*	교육 연구개발
		05.2*	사회보장 연구개발
		08.2*	환경보호 연구개발
		09.2*	서비스 연구개발(n.e.c.)
3. 보건			
3 100	병원과 재활	02.3*	병원서비스
3 200	노인시설	02.3*	
3 300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02.2*	외래환자서비스
		02.3*	병원서비스
3 400	기타 보건서비스	02.1	의료제품, 기기 및 장비
		02.2*	외래환자서비스
		02.4	공중위생서비스
		02.6	기타 보건서비스(n.e.c.)
4. 사회복지			
4 100	사회복지	05.1*	사회보장 서비스
4 200	긴급구호 및 재난	05.1*	사회보장 서비스
4 300	소득지원 및 유지	05.1*	사회보장 서비스
5. 환경			
5 100	환경	08.1*	환경보호(n.e.c.)
5 200	동물보호	08.1*	환경보호(n.e.c.)
		09.1*	서비스(n.e.c.)

INCPO 분류	설명	COPNI 분류	설명
6. 개발 및 주거			
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 개발	05.1*	사회 보장 서비스
		09.1*	서비스(n.e.c.)
6 200	주택	01.0	주택
6 300	고용 및 훈련	04.5*	수준별 정의할 수 없는 교육
		05.1*	사회 보장 서비스
7. 법, 변호 및 정치			
7 100	시민권 및 변호 단체	09.1*	서비스(n.e.c.)
7 200	법률서비스	09.1*	서비스(n.e.c.)
7 300	정치조직	07.1	정당 서비스
8. 자선 증개 및 자원봉사 홍보			
8 100	자선재단	04.7*	기타 교육서비스(n.e.c.)
		09.1*	서비스(n.e.c.)
		02.5*	보건 연구개발
		04.6*	교육 연구개발
		05.2*	사회보장 연구개발
		08.2*	환경보호 연구개발
		09.2*	서비스 연구개발(n.e.c.)
8 200	기타 자선 증개 및 자원봉사 증진	09.1*	서비스(n.e.c.)
9. 국제			
9 100	국제 활동	09.1*	서비스(n.e.c.)
10. 종교			
10 100	종교집회 및 협회	06.0	종교
11.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11 100	기업협회	09.1*	서비스(n.e.c.)
11 200	전문가협회	07.3	전문단체 서비스
11 300	노동조합	07.2	노동기구 서비스
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단체			
99 100	기타	09.1*	서비스(n.e.c.)



〈표 3〉 통계표 II의 구조 : 비영리단체 종류별 이진지불 원천

비영리단체 종류	이진지불 수입						이진지불 지급						선물, 기부 및 기여금			
	총 원천		법인 기업	정부	기구		외국	외국	총 원천	법인 기업	정부	기구	외국	법인 기업	기구	외국
	SNA 기준 (1)	자원봉사인력 및 시장 NPT의 미시장 산출 포함 (3)			(1)	(3)										
총비영리단체																
1. 문화 및 오락																
12. 기타																

〈표 4〉 통계표 II의 구조 : 비영리단체별 임금고용자, 자원봉사자, 자산축적 및 자산위치

비영리단체 종류	임금고용자			자원봉사자			자산축적			자산위치(연말)		
	고용자 수	FTE	보수	고용자 수	FTE	보수	비금융 자산	금융 자산	금융 부채	비금융 자산	금융 자산	금융 부채
총비영리단체												
1. 문화 및 오락												
12. 기타												

〈표 5-2〉 통계표Ⅲ의 구조 : 비영리부문 및 단체별 통합경제계정(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포함)

SNA 거래, 기타 플로우 & 스톱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 부문	
	총		기타	총		(a)	(b)	(c)	총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I. 생산계정															
II.1.1. 소득발생계정															
II.1.2. 본원소득분배계정															
II.2. 제2차 소득분배계정															
II.3. 현물소득재분배계정															
II.4.1. 가치분소득사용계정															
II.4.2. 조정가치분소득사용계정															
III.1. 자본계정															
III.2. 금융계정															
III.3.1.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III.3.2. 채평가계정															
IV.1. 기초 대차대조표															
IV.2. 대차대조표 증감															
IV.3. 기말 대차대조표															

〈표 6-1〉 통계표Ⅳ의 구조 : 산업, 부문 및 제도단위별 산출, 부가가치 및 고용(SNA 기준)

A. 산출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B. 부가가치(총)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C. 고용(FTE)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표 6-3〉 통계표Ⅳ의 구조 : 산업, 부문 및 제도단위별 산출, 부가가치 및 고용(자원봉사 및 고용(자원봉사 및 시장비영리단체의 비시장 산출포함))

A. 산출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B. 부가가치(총)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C. 고용(FTE)

ISIC 분류	비금융범인			금융범인			정부			가계			NPISHs	총 비영리부문
	총(a)	NPI(b)	기타(c)	(a)	(b)	(c)	(a)	(b)	(c)	(a)	(b)	(c)		
총산업														
A. 농업, 사냥 및 숲														
O.														
P. 고용인 고용 민간가구														
Q. 기타 영역 내 기관 및 단체														

〈표 7-2〉 통계표 V의 구조 : 직업별, 성별 및 연령별 임금고용자,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단체 회원

직업 및 연령 특성 총직업 및 연령 직업 II. 연령 그룹 16세미만	임금고용자		자원봉사자		회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표 7-3〉 통계표 V의 구조 : 직업별, 성별 및 연령별 비영리단체 기부

직업 및 연령 특성 총직업 및 연령 직업 II. 연령 그룹 16세미만	기부인구비율		평균기부금		추정된 총기부금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표 7-4〉 통계표 V의 구조 : 비영리단체별 산출과 능력지표

비영리단체 종류 총비영리단체 I. 문화 및 오락 II. 기타	지표 예		총경제		비영리부분		비영리부분의 비중(%)	

〈표 7-5〉 통계표 V의 구조 : 비영리단체별 총비영리부문의 수입 측면

비영리단체 종류	핵심회계변수 : 수입							
	총 (1)=(2)+(4)	판매, 수수료, 요금 및 재산소득으로부 터의 수입 (2)	정부의 채상자 지불 (3)	이전 수입			국외	
				총 (4)=(5)+(6)+(7)+(8)	민간자선 (5)	정부보조 (6)		민간자선 (7)
총비영리단체								
1. 문화 및 오락								
12. 기타								

〈표 7-6〉 통계표 V의 구조 : 비영리단체별 총비영리부문의 지출 측면

비영리단체 종류	핵심회계변수 : 지출						
	총 (9)=(10)+(15)+(16)	운영비용 (10)	비용자보수 (11)	중간소비 (12)	총 고정자본 소모 (12)	생산물제(순) (14)	재산소득 (15)
총비영리단체							
1. 문화 및 오락							
12. 기타							

〈표 7-7〉 통계표 V의 구조 : 비영리단체별 총비영리부문의 주요 구조변수 측면

비영리단체 종류	구조변수						
	인여 (17)=(1)-(9)	의제자원봉사자 보수 (18)	단체 수 (19)	회원 수 (20)	회원권 수 (21)	고용자 수 (22)	고용 FTE (23)
총비영리단체							
1. 문화 및 오락							
12. 기타							